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56호 서식]

요금후납

고지서 재중	전자납부 가능

과태료 부과근거

1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
2.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의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
   - 납부기한 경과시 3%, 이후 매달 1.2%가산금 부과(최장 60개월)
   -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, 신용정보제공 및 고액체납자 감치
3.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
4.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
5. 의문사항은 (☎)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.

가산세 산출근거

이 납부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산세 구분	대상금액	세율	세액

가 상 계 좌

가상계좌(23:00까지 납부가능합니다)	유효기간 (예약이체불가)

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(납세자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
성명(상호)	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회계연도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
			과세기간		
주소(사업장)					

납부기한	년 월 일 까지
계	
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	
납기경과 1월 이내 계①	
납기경과 가산금②	
납기경과 계(①+②)	

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)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은 행
우체국

수납인

납부서 (수납기관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
성명(상호)	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회계연도	일반 회계	기획재정부 소관 / 조세
			과세기간		

납부기한	년 월 일 까지
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	
납기경과 1월 이내 계①	
납기경과 가산금②	
납기경과 계(①+②)	

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은 행
우체국

수납인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